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2년 5월 5일(목) 총 3매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담 당 자	• 통합징수담당 김정구 ☎440-5771 • 담당자 이종성 ☎440-5775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항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직구 물품 압류한다

-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87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 -

- 해외여행 입국 시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 공항서 압류 -

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으로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약 6억천만 원 이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개요 및 절차

참 고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 체납처분 위탁 개요

○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1. 1. 1.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 관련 법령: 지방세징수법 §39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5의2, 관세법 §237

○ 지자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

* ① 입국시 휴대품, ②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③ 일반 수입품 등

□ 위탁 대상

○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체납처분 위탁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징수법 §11① 및 같은 법 시행령 §19① : 지방세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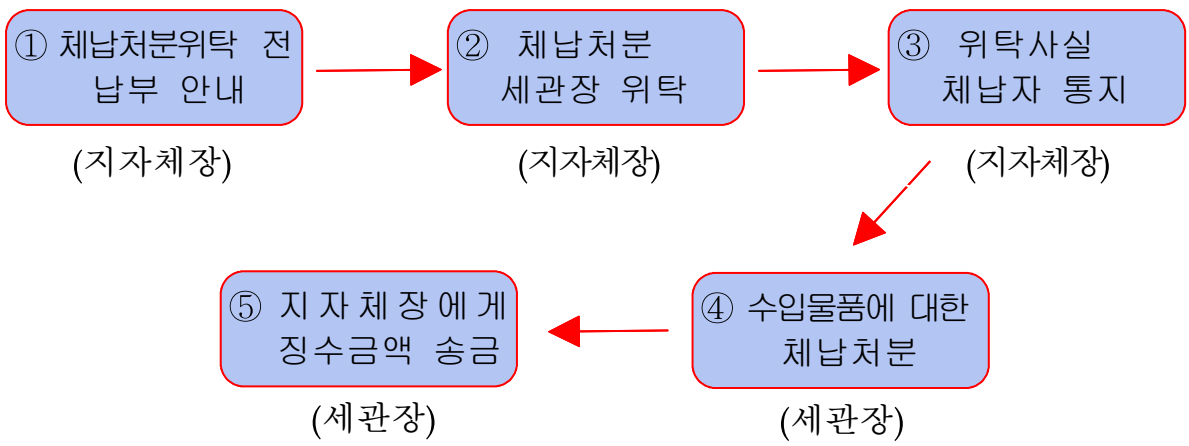
□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